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3(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및 연계)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.

1. 행정안전부·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·관세청
2. 지방자치단체
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기관

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계기관의 검역·검사·통관·유통관리·처분 및 인가·허가·지정·승인에 관한 정보
2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.

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의4(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제공·연계에 관한 사항
3.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에 대한 활용 및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제49조의3(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제공 및 연계) ① 법 제39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이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한 권한이 위임 ·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.		
		1. 행정안전부 · 농림축산식품부 · 해양수산부 · 관세청		
		2. 지방자치단체		
		3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사전에 협의한 기관		
		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
		1. 관계기관의 검역·검사·통관·유통관리·처분 및 인가·허가·지정·승인 등에 관한 정보		

<u><신 설></u>	2.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	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.
	제49조의4 (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	1.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	2.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 제공·연계에 관한 사항
	3.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에 대한 활용 및 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
	4.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식품의

	<u>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항</u>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57